

## S-OIL Vendor ESG 행동규범

S-OIL은 Vendor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Vendor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Vendor ESG 행동규범 (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Vendor로 하여금 인권 및 노동, 환경, 안전 및 보건, 기업윤리 분야에서 최선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가 Vendor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 규범을 위반한 Vendor가 적절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S-OIL과의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S-OIL은 본 행동규범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전자구매시스템 (<https://epro.s-oil.com>)을 통해 Vendor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S-OIL은 상호 동반성장하기 위해 Vendor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소속 국가의 법규와 다른 경우, 소속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지켜야 합니다.

### 인권 및 노동 (Labor & Human Rights)

#### 가) 차별 금지

Vendor는 임직원의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Vendor는 임직원의 고용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조건은 요구하지 않으며, 임신여부/장애 등 신체적인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을 고용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나) 강제노동 금지 및 근로 조건 준수

Vendor는 임직원에게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Vendor는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은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 아동 노동 금지

Vendor는 만 15세(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을 안전 보건 위험이 큰 작업 또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라) 결사의 자유 보장

Vendor는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Vendor는 소속 국가의 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불이익한 처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협약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Vendor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괴롭힘 발생 시, Vendor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기타 제도

Vendor는 임직원들의 근무 상 고충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의 수렴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탄력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 제도를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환경 (Environment)**

가) 환경 법규 준수

Vendor는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 경영

Vendor는 환경 경영 전략 또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환경 관련 인증(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환경표지 등)을 보유하여 환경 경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 교육 및 전담 조직

Vendor는 환경 관련 법적교육 이외의 내부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으로서 하여금 Vendor의 환경 경영 전략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 자원 및 에너지 절약

Vendor는 용수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원부자재(사무용품 등 포함)의 목록화 및 재고관리를 실시하는 등 자원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도입, 공정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마) 환경오염의 예방

Vendor는 조직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제품 또는 서비스 설계 시 환경성(탄소 배출 최소화, 자원절약,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가능성, 유해물질사용 최소화,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도입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활동에도 힘써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Safety & Health)**

### 가) 산업안전 관리

Vendor는 근로 장소 및 환경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 소음 등)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산업안전관련 인증을 보유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힘써야 합니다.

### 나) 비상사태 대응

Vendor는 자연 재해, 집단 감염, 화재, 공습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대피요령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실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다) 사고 관리

Vendor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라) 보건 관리

Vendor는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기숙사, 식당, 체력단련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Vendor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검진(일반/특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윤리 (Ethics)**

### 가) 투명한 경영 준수 및 반부패

Vendor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선물 등의 뇌물수수, 알선, 청탁 등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Vendor는 이러한 임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하여야 합니다.

### 나) 공정 거래

Vendor는 공정 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담합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Vendor의 임직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다) 이해충돌 방지

Vendor 및 그 임직원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나 고객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3자와 부당한 약속을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이해충돌 행위는 금지됩니다

라) 정보 유출 금지

Vendor는 제품 및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타사의 제품 및 기술을 탈취해서도 안됩니다. Vendor는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마) 직원 교육

Vendor는 매년 주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반부패/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투명 경영, 공정 거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